

목 차

■ 지평 소식 ■

-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4
-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6
- 북한산 정화활동7
-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후원8

■ 주요 업무 사례 ■

- LS전선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9
- 동아원을 대리하여 LG상사에 당진탱크터미널 매각 자문10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위한 소송.....11
-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12
- SPH 및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롯데마트 개설 관련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거부취소소송에서 승소.....13
- 국방기술품질원과 업무협약 체결14
- 지평, 두루, SK 사회성과인센티브프로젝트 추진단과 업무협약 체결.....15
- 지평, 두루,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 체결16

■ 법률 논단 ■

- [자원·에너지·인프라] 셰일(Shale) 혁명 - 프랙킹(Fracking)을 둘러싼 논란.....17

■ 최신 판례 ■

- [건설부동산]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도 시행사에 아파트분양광고에 관한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20
- [도산]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24

■ 최신 법령 ■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7
- [노사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령 개정29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35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져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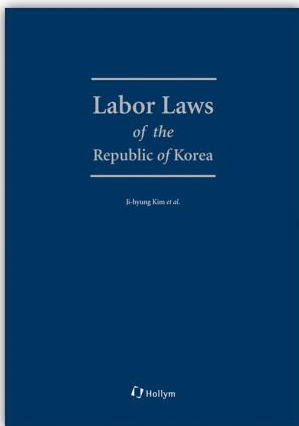
■ 단신 ■

- 김상준 변호사, 제19차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발표38
- 임성택 변호사,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 외39
- 최승수 변호사, 2015년 학술대회(주제: 콘텐츠, 디자인과 법)에서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 외40
- 이소영 변호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기술혁신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의(주제: 국가 R&D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기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토론자로 참석 외41
- 이광선 변호사, 노동법 현장 실전 사례 및 대응전략과정 강연에서 '징계 및 해고, 휴일·휴가'를 주제로 강의42

- 윤재민, 김이태 변호사가 작성한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논문 한국부동산
산업학회지에 게재43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국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및 운영 사례' 발표.....44
-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제6기 캄보디아 지역전문가 과정에서 '캄보디아 법률 및 실무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강의45
- 임승혁 회계사,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으로 위촉46

■ 지평 소식 ■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하였습니다.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국내 노동법의 대가이자 대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하였습니다.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노동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서적은 노동법에 관심있는 인사노무담당자나 법률가들에게 수준 높은 노동법 이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각종 단어와 표현들을 영어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국내 대형서점은 물론, 세계 최대 전자책 판매처인 AMAZON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김지형 前 대법관, 한국 노동법 해설 영문책자 펴내(2015. 6. 30.)
- 코리아중앙데일리 - Law book aimed at foreign companies(2015. 7. 20.)
- 코리아헤럴드 - English book on Korea's labor law available(2015. 7. 2.)
- 리걸타임즈 - [지평, 영문 노동법 해설서 발간] 외국에 노동법 길잡이 기대(2015. 7.)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2015. 6. 26.)
- 뉴시스 - [새책] 한국 노동법 알기...'레이버 로우스 오브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2015. 6. 30.)
- 뉴스토마토 - 법무법인 지평, 노동법 영문해설서 발간(2015. 6. 30.)
- 머니투데이 - [피플] 첫 노동법 영문 해설서 출간, 김지형 前 대법관(2015. 7. 1.)
- 세계일보 - "김지형 前 대법관, 한국 노동법 해설 영문책자 펴내"(2015. 6. 25.)

■ 지평 소식 ■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월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동법 준수, 비밀 정보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가 '영업비밀 보호수단으로서 전직금지약정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을, 이광선 변호사가 '인사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2015. 7. 15.)
- 세계일보 - 'ICT 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 세미나 15일 성료(2015. 7. 15.)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 대상 세미나 개최(2015. 7. 15.)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북한산 정화활동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6월 20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악산에서 매해 2차례 실시하였던 산 정화활동은 올해 처음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진행하였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평 구성원 22명이 참여하여 돼지풀 제거 및 등산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북한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후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6월 24일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후원에는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에 상응하여 회사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이 활용되었고, 지평 구성원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네팔의 경우 후원금 전달의 투명성과 시간 등의 문제가 있어 후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신두팔축 지역의 커피 농부들과 생산지 재건 등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커피의 '지역정착 프로그램' 및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진 피해마을 어린이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지정 기부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네팔 지진복구 지원\(2015. 7. 3.\)](#)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에 1000만원 후원\(2015. 6. 26.\)](#)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 네팔 매칭그랜트 후원\(2015. 6. 26.\)](#)

■ 주요 업무 사례 ■

LS전선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지평은 LS전선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은 해외 신흥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한 한국 대기업의 현지법인이 국내 증시에 진입하는 U턴 상장의 첫 사례가 될 예정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LS전선 베트남법인, 국내 상장 추진\(2015. 6. 18.\)](#)

[담당 변호사]

■ 본사 베트남팀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이민경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동아원을 대리하여 LG상사에 당진탱크터미널 매각 자문

지평은 동아원을 대리하여 LG상사에 당진탱크터미널을 매각하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아원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매각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EBN - LG상사, 당진탱크터미널 306억원에 최종 인수\(2015. 8. 10.\)](#)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최정묵 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위한 소송

지평과 태평양 등은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인정한 첫 판례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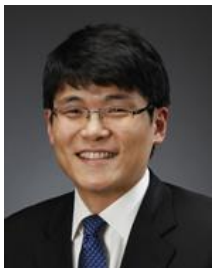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Law&Biz] 태평양·지평의 따뜻한 승소...교통약자 이동권 '한 걸음 더'(2015. 7. 14.)
- 월페이뉴스 -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일부 승소(2015. 7. 15.)
- 에이블뉴스 -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법 개정 '촉구'(2015. 7. 24.)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건축된 아파트에도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은마아파트 재건축, 청신호(2015. 6. 24.)

[담당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마상미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SPH 및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롯데마트 개설 관련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거부취소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SPH 및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롯데마트 개설 관련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거부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세계일보 - 대구 칠성동 롯데마트 개점허가 행정소송, 롯데측 승소\(2015. 6. 3.\)](#)

[담당 변호사]



조용기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국방기술품질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평은 국방기술품질원과 업무협약 및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국방 및 공공계약분야에서의 정보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대식 고문



김영수 변호사



박근배 변호사

[관련 사진]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두루, SK 사회성과인센티브프로젝트 추진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평과 두루는 SK 사회성과인센티브프로젝트 추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프로젝트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환경,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 양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평과 두루는 SK가 지원하는 35개의 사회적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SK, 사회적기업에 무료 법률지원(2015. 6. 9.)
- 서울경제 -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 추진단 업무 협약(2015. 6. 9.)
- 조선비즈 - SK, 사회적 기업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2015. 6. 9.)
- 연합뉴스 - 사회적기업, 무료 법률서비스도 받는다...SK그룹 등 협약(2015. 6. 9.)

[관련 사진]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두루,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 체결

지평과 두루는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루트임팩트가 지원하는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루트임팩트는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혁신가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비영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신생 사회적기업이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루트임팩트는 이를 위하여 비영리 활동가나 사회적기업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직접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두루, 비영리단체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2015. 8. 24.\)](#)

[관련 사진]



■ 법률 논단 ■

[자원 · 에너지 · 인프라] 셰일(Shale) 혁명 - 프랙킹(Fracking)을 둘러싼 논란



(법무법인 지평 박상배 변호사 · University of Denver, Sturm College of Law, Environmental & Natural Resources Law Course 유학 중)

셰일 가스과 오일 개발은 미국 경제의 부활, 국제유가의 하락, 러시아의 경제 위기, 중동의 오일 패권주의의 몰락 등에 이미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내에서 프랙킹으로 대표되는 셰일 개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 매장량 기준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셰일 가스 매장량을 기준으로 중국, 아르헨티나, 알제리에 이어 네 번째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최근 프랙킹 기술(수평 굴착 기술 및 수압 분사 기술)의 발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상대적으로 급상승한 천연가스 가격 등에 힘입어 미국 내 셰일 가스 및 오일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프랙킹이 미국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다양합니다. 미국 석유 산업의 부활, 석탄 위주의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 감소 및 이에 따른 CO2 배출 감소,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 감소 및 그에 따른 대외정책의 유연성 확보, 제조업 부흥과 그에 따른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는 환경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 부문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프랙킹 과정에서 막대한 수자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9,294개의 유전(Well)이 프랙킹 방식으로 개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970억 갤런의 물이 사용되었으며, 유전이 개발된 지역의 47%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렸고, 55%가 전에 없던 가뭄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자원의 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랙킹 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와 식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기의 오염입니다. 프랙킹 과정에서 메탄 가스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대기에 배출됩니다. 그 밖에도 유전의 폭발 가능성, 지진 유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가 불가피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유전지역 인근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의 유기농 농업과의 갈등, 프랙킹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가축들이 노출됨에 따른 피해,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경제적 문제로 인해 프랙킹은 미국 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식수 보호법(The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수질 오염 방지법(The Clean Water Act, CWA), 대기 오염 방지법(The 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수자원 및 대기가 프랙킹을 통해 오염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획 및 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화학물질 등 위험원의 위치와 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2015년 3월 내무부 규칙(Interior Department Rules)으로 공유지 내 오일 및 가스 프랙킹 개발에 관한 신 규제(The New Restrictions on Oil & Gas Fracking Operations on Public and American Indian Lands)를 제정하여 현재 화석 연료 생산의 1/4을 차지하는 공유지 내 프랙킹에 대하여 정면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전미석유연합(The Independent Petroleum Association of America, IPAA)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즉시 제기하였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주나 지방에서는 관련 규제의 도입 외에도 프랙킹을 중단(moratorium)하거나 아예 금지(ban)하기도 합니다. 프랙킹을 중단한 곳으로는 펜실베이니아 주(2015년 1월), 콜로라도의 볼더 카운티(2012년 1월) 및 브룸필드 시(2013년 11월 무효 소송 중이나 여전히 유효)를 들 수 있고,

금지하는 곳은 뉴욕 주(2014년 12월),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 시(2010년 11월), 뉴멕시코의 모라 카운티(2013년 4월), 콜로라도의 롱몬트 시(2012년 11월 무효 소송 중이나 여전히 유효), 텍사스의 덴톤 시(2014년 11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프랙킹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셰일 오일 가스의 생산이 종주국인 미국 내부에서는 프랙킹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금지하고 있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셰일 오일 가스의 생산 및 공급이 이미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이긴 하나,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이미 국지적으로는 셰일 오일 가스의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세기 중반부터 프랙킹을 최초로 시작한 미국은 내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보다 프랙킹 관련 경험과 논의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과 논의는 프랙킹을 도입하려는 다른 여타 나라의 중요한 참고 대상이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프랙킹 관련 소송 기타 논의 및 규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률 판례 ■

[건설부동산]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도 시행사에 아파트분양광고에 관한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원 변호사 | 윤성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부산 남구에 시공된 아파트의 수분양자 및 수분양자의 양수인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 및 과장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무효¹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¹ 참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계약의 취소 및 무효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기존 판례의 취지만 참고삼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것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항이 아닌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②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2.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된다는 전제에서,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쟁점에 관하여 원심인 부산고등법원만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시행사의 동의 하에 분양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수분양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1가합 70614, 2011가합84040, 2011가합116084(병합)].

나.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수분양자의 지위 이전은 “계약상 지위의 양도”로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 이전될 뿐이므로,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하여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 이외에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

시하여, 채권양도 없이도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이 직접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는 하였습니다.

다. 검토

원심은 물론이고 하급심 판례 중 별도의 판단 없이,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처럼 판단한 경우가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양자의 양수인이 시행사 등에게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선,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거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겠지만, 계약상 지위의 인수는 해당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만 이전할 뿐 불법행위와 같이 계약에 기하지 않은 법률관계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고,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없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 예시로 든 사정이 상당히 폭넓게 주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에 있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판결의 법리가 결과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줄지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같은 쟁점이 문제 될 장래의 사건에서 법원이 대법원이 거론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론(補論) : 시공사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이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대하여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도 시행사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면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 사건처럼 법원이 시행사의 광고에 관여한 시공사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다11501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등). 시공사가 분양카탈로그 제작 및 분양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허위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 문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부당이득반환등 판결](#)

■ 법률 판례 ■

[도산]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 전환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하면서 원고의 甲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함.

피고가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함.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 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됨.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년 11월 12일 갑 주식회사의 주식 14,850주를 취득하였고, 당시 위 주식의 시가는 주당 1,285원임.

회생계획 인가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여 대출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2. 쟁점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3. 판시사항

-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피고가 위 외상대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 금액이 소멸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4.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제193조 제2항 제5호),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여야 합니다(제206조 제1항). 한편,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246조).

법원이 회생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기존채권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받은 것일 때 제3자의 대출금채무가 얼마나 변제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의 액면 상당액이 변제된다는 견해(A설)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변제된다는 견해(B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상 출자전환의 변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B설을 채택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관련 법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B설을 채택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인 19,082,25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서 변제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 출자전환에 관한 판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희석 변호사](#)**1. 주요 내용**

2015년 7월 24일에 공포되어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일부 조항은 즉시 또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사모펀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제도 개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Hedge Fund)를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명칭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바꾸고 설립 및 재산운용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시중 부동산의 원활한 흐름 촉진과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한 외국자본의 대항마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제도의 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1) 복잡·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
- (2)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 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나)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3)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
- 가)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4)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 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

지난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모펀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제도를 대폭 개정하고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그간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노사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령 개정

이광선 변호사 | 임이지 변호사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령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3412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 개정**가. 우리사주제도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제36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가 시행 예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의 도입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실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거래(손실보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 거래는 ① 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기타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수익확보수단이 없어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 보유를 유인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대여우리사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i) 대여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를 보장할 것
 - (a) 의결권, (b)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c)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d) 기타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권리
- (ii)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 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것
- (iii)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의 요건을 준수할 것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 시행 예정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둘 이상이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관련 규정 개정되었습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 2015.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18호, 2015. 6. 15. 공포 2015. 7. 1. 시행) 개정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체당금(少額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기준(제7조제2항 신설) 신설

개정 임금채권법 시행령에는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訴)를 제기하여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도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나.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 사업주 기준(제8조제2항 신설) 신설

건설업에서 도급사업의 경우에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의 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은 사업기간이 짧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하수급인의 직상(直上)의 수급인인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확정된 중국판결 등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제9조제1항제2호 신설) 신설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중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별표 1 제1호) 보완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의 요건 중 300명 이하의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현행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별표 1 제호의 상시근로자 수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객관적으로 산출되도록 산정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8호, 2015. 6. 30. 공포 2015. 7. 1. 시행) 개정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 비율 등을 변경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개선(제29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후단 신설)을 위해 규정 신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그 시작일 전 6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후와 6개월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각각 지원금의 100분의 50씩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나.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이 확대(제43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8호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전직 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을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돕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사후 지급 비율이 상향 조정(제95조제3항·제4항 및 제98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최신 법령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2015년 6월 2일 대법원규칙 제260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36호, 2015. 5. 12.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가.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71조의2 신설).
- 나. 간이조사위원회와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함(제71조의3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최신 법령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법정손해 배상청구 가능해져

최승수 변호사 | 이해원 변호사, 허종 변호사

1.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민간 전 분야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률 제1342호, 이하 '개정 법률').

개정 법률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①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정비하고,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③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39조 제3항·제4항, 제39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초과하여 국가가 처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영미법(英美法)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개정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합니다(제39조 제4항).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제39조 제3항 단서).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개정 법률은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입증 없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의2 제1항 제1문).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제39조의2 제1항 제2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보주체는 보다 손쉽게 기업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소 위험 및 손해배상 지급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2016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2.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단신 ■

김상준 변호사, 제19차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김상준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9차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로이슈 - 김상준 변호사 "청년법조인 여러분, 동남아 문을 두드려 보세요"\(2015. 7. 23.\)](#)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6월 12일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에이블뉴스 - 장애인 공익소송 활성화 과제 '산적'\(2015. 6. 15.\)](#)

임성택 변호사, 광복 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공동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8월 6일 개최된 광복 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공동심포지엄(주제: 염원에서 실천으로)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뉴시스 - \[종합\] 시민단체 "남북 실질적인 대화 나서야"...'광복 70주년 공동연대선언'\(2015. 8. 6.\)](#)

■ 단신 ■

최승수 변호사, 2015년 학술대회(주제: 콘텐츠, 디자인과 법)에서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6월 25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후원하는 2015년 학술대회(주제: 콘텐츠, 디자인과 법)의 제3세션에 참가하여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서울재즈뮤직아카데미의 '뮤직비즈니스 특별과정'에서 '음악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리스크 관리(계약서 작성, 검수, 협상기초 등)'를 주제로 강의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서울재즈뮤직아카데미의 '뮤직비즈니스 특별과정'에서 매주 월요일 총 5회에 걸쳐 '음악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리스크 관리(계약서 작성, 검수, 협상기초 등)'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이소영 변호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기술혁신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의(주제: 국가 R&D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기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 이소영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6월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기술혁신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주제: 국가 R&D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기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아카데미 음악과정' 중 '저작권 계약실무'를 주제로 강의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아카데미 음악과정' 중 '저작권 계약실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이광선 변호사, 노동법 현장 실전 사례 및 대응전략과정 강연에서 '징계 및 해고, 휴일·휴가'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노동법 현장 실전 사례 및 대응전략과정' 강연에서 '징계 및 해고, 휴일·휴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윤재민, 김이태 변호사가 작성한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논문 한국부동산산업학회지에 게재



(법무법인 지평 윤재민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지난 6월 30일 윤재민 변호사가 주저자로, 김이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논문이 한국부동산산업학회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논문]

- 한국부동산산업학회지 -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2015. 6.)

■ 단신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및 운영 사례' 발표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법률포럼에서 Norilsk Nickel이 주관하는 라운드 테이블 '지역발전 및 투자환경: 새로운 법률적 해결점'의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및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Norilsk Nickel 부사장이 사회를 맡은 라운드테이블은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차관과 중국 법무부 국장, 러시아 지방정부 부지사, 기업 법무담당자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러시아 지역 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TACC - 라운드 테이블 '지역발전 및 투자환경: 새로운 법률적 해결점'\(2015. 5. 29.\)](#)

■ 단신 ■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제6기 캄보디아 지역전문가 과정에서 '캄보디아 법률 및 실무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는 지난 5월 28일 KOTRA에서 주최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제6기 캄보디아 지역전문가 과정에서 '캄보디아 법률 및 실무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임승혁 회계사,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회계사](#))

임승혁 회계사는 지난 7월 28일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